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의 주소 요건 완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21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4. 10. 31.
3. 회 부 일: 2024. 11.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

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  
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간이귀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생략)<br><u>&lt;신설&gt;</u> |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현행법 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sup>1)</sup> 귀화허가의 중

1)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 ⑤ (생략)

류는 ① 통상적인 기본절차로 진행되는 일반귀화,<sup>2)</sup> ② 대한민국 국민과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sup>3)</sup>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 인정되는 방식인 특별귀화<sup>4)</sup>로 구분됨.

## 이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

2)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 있을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3)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의 요건<sup>5)</sup>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귀화의 요건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헌행법 제5조제1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헌행법 제5조제1의2호)”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sup>6)</sup>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에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비록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및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간이귀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헌행법에 따른 특별귀화 대상이 되므로<sup>7)</sup>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나,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경

5) 각주 3)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2항 참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7)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우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행법 제6조제2항<sup>8)</sup>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때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임.

### [연도별 특별귀화를 통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현황]

(‘24. 12. 기준, 단위 : 명)

| 연도<br>합계 | ‘11<br>0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1,394    | 770       | 75  | 40  | 44  | 34  | 66  | 42  | 47  | 65  | 37  | 33  | 61  | 42  | 38  |

※ 자료 : 법무부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동반취득하는 것이

#### 8)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생략)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되어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비록 국내 주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대한민국에의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F-6)<sup>9)</sup> 등을 통해 국내거주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 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종합평가를 면제<sup>10)</sup>하여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9)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종합평가의 면제) 영 제4조의2제1항,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등(제18조 관련)

1. 종합평가 면제 대상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국적취득 요건에서 거주요건은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심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기반 형성 심사, 혼인의 진정성 인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1)</sup>

|              |
|--------------|
| 문 의 처        |
| 02)6788-5057 |

가. ~ 나. (생략)

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라. 법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잔류된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자녀로서 법제6조제1항1호 또는 제7조제1항1호에 따른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마. (생략)

2. (생략)

11)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가. (법무부)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요건 중 1~2년의 국내 거주는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귀화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혼인의 진정성 판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혼인 기간을 상향하더라도 국내 거주 요건 면제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제시

나. (법원행정처)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국적 취득요건으로서 거주기간 요건은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간이귀화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지도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주요건을 둘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